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조회 및  
자격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 권영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957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1.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br>에 관한 사항 신설 ..... | 2 |

## I. 제안경위

2024년 7월 18일 권영세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  
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직업 현장에 보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은 그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반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에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근로지원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 신설).

### Ⅲ. 검토의견

#### 1.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신설

#####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근로지원인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안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 신설 등).

[ 표 ] 개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신설> | 제19조의3(근로지원인 자격요건 등)<br>① 근로지원인이 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br>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교육내용 또는 자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령으로 정한다. |
| <신설> | 제19조의4(근로지원인의 결격사유)<br>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지원인이 될 수 없다.<br>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

<신 설>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근로지원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제19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근로지원인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9조의5(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제43조제3항에 따라 공단이 근로지원인 관련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근로지원인

<신 설>

이 되려는 사람이 제19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6(근로지원인의 자격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지원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원인이 된 경우
3. 근로지원인이 업무수행 중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  |                                                                                                                                                                                                      |
|--|------------------------------------------------------------------------------------------------------------------------------------------------------------------------------------------------------|
|  | <p><u>근로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u></p> <p>4. 그 밖에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u>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u></p> <p>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p> |
|--|------------------------------------------------------------------------------------------------------------------------------------------------------------------------------------------------------|

## 나. 검토의견

현행법 제19조의2에 따르면<sup>1)</sup>,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을 직업 현장에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에 대하여는 그 자격, 결격사유, 범죄경력 조회 및 자격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sup>2)</sup> 근로지원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규정을 마련하여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1) 제19조의2(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근로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참고자료 참조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근로지원인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먼저 ①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근로지원인이 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다음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②-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근로지원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외), ②-2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②-3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뒤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②-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②-6안 제19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근로지원인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근로지원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다음 ③근로지원인의 자격 취소에 대해서는, 근로지원인이 ③-1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지

원인이 된 경우, ③-3근로지원인이 업무수행 중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③-4그 밖에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지원인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④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근로지원인 관련 업무를 수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장)은 근로지원인이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하고, 요청을 받은 시·도경찰청장 등은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근로지원인에 대한 자격, 결격사유, 자격취소 및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근로지원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다만, 개정안은 근로지원인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포함하고 있는데,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격 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바,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

을 삭제하는 내용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협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sup>3)</sup>이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안 제19조의4제4호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를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구분하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를 ‘집행이 면제된 경우’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을 끝난 사람이 사회로 복귀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실형 집행이 완료된 뒤 일정 기간의 지원 제한 기간을 두는 방안<sup>4)</sup>도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이 모두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두 기관 간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이견이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

3) 정부 제출. 의안번호 제2202207호.

4) 예를 들어,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사유에 ①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바, 근로지원인에 대해서도 금고 이상의 실형 집행을 종료(면제)된 뒤 일정 기간 동안 근로지원인 지원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구 분         | 경찰청                                                                                                                                        | 고용노동부                                                                                                                        |
|-------------|--------------------------------------------------------------------------------------------------------------------------------------------|------------------------------------------------------------------------------------------------------------------------------|
| 안 제19조의5제1항 | 경찰청의 전산으로 관리하는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자료(형집행종료일·면제일 등)가 결격사유에 있으므로, 관리 감독기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요청을 받는 기관을 ‘관계기관’으로, 조회정보를 ‘범죄경력자료 등’으로 확대할 필요 | 정확한 형집행종료일을 알 수 없더라도 경찰청 자료 내에서 형기를 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형집행종료(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 유지 필요                                           |
| 안 제19조의5제2항 |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으므로 결격사유 조회 요청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                                                                                    | 타법에서도 결격사유 판단 주체인 사인이 직접 관할경찰관서에 요청하는 입법례가 있고, 고용노동부가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수행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정안 유지 필요 |

문 의 처

02)6788-5538

**제26조(활동지원인력의 요건 등)**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 활동지원인력의 범위·업무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활동지원인력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9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①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이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인력이 된 경우
3.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5. 자격정지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1.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24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지원급여 비용을 받은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 법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비용이 지급되는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활동지원기관이 매우 부족한 지역에 수급자가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하지 아니한다.